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경유)

제목 의료법 제21조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대한의사협회 제680-2933(2011.7.5)호로 질의한 「의료법」 제21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환자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8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198조 등 「의료법」 제21조에 열거되지 않은 법 규정에 따른 환자의 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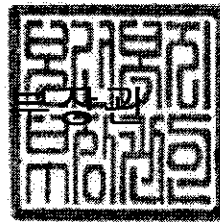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끝.

보건복지



주무관 이영지 의료기관정책과 전결 08/03
장 배금주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1764 (2011. 08. 03.)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 <http://www.mw.go.kr>
전화 02-2023-8813 전송 02-2023-7367 / iamji01@korea.kr / 대국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